

宿泊約款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適用範囲)

- 第1条 当ホテルが宿泊客との間で締結する宿泊契約及びこれに関連する契約は、この約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とし、この約款に定めのない事項については、法令等（法令又は法令に基づくものをいう。以下同じ。）又は一般に確立された慣習によるものとし、
2. 当ホテルが、法令等及び慣習に反しない範囲で特約に応じ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特約が優先するものとし、

(宿泊契約の申込み)

- 第2条 当ホテルに宿泊契約の申し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は、次の事項を当ホテルに申し出ていただきます。
- (1) 宿泊者名
 - (2) 宿泊日及び到着予定時刻
 - (3) 宿泊料金（原則として別表第1の基本宿泊料による。）
 - (4) その他当ホテルが必要と認める事項
2. 宿泊客が、宿泊中に前項第2号の宿泊日を超えて宿泊の継続を申し入れた場合、当ホテルは、その申し出がなされた時点で新たな宿泊契約の申し込みがあったものとして処理します。

(宿泊契約の成立等)

- 第3条 宿泊契約は、当ホテルが前条の申し込みを承諾したときに成立するものとし、ただし、当ホテルが承諾をし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2. 前項の規定により宿泊契約が成立したときは、宿泊期間（3日を超えるときは3日間）の基本宿泊料を限度として当ホテルが定める申込金を、当ホテルが指定する日までに、お支払いいただきます。
3. 申込金は、まず、宿泊客が最終的に支払うべき宿泊料金に充当し、第6条及び第19条の規定を適用する事態が生じたときは、違約金に次いで賠償金の順序で充当し、残額があれば、第12条の規定による料金の支払いの際に返還します。
4. 第2項の申込金を同項の規定により当ホテルが指定した日までにお支払いいただけない場合は、宿泊契約はその効力を失うものとし、ただし、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するに当たり、当ホテルがその旨を宿泊客に告知した場合に限ります。

(申込金の支払い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特約)

- 第4条 前条第2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ホテルは、契約の成立後同項の申込金の支払い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特約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
2. 宿泊契約の申し込みを承諾するに当たり、当ホテルが前条第2項の申込金の支払いを求めなかった場合及び当該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しなかった場合は、前項の特約に応じたものとして取り扱います。

(施設における感染防止対策への協力の求め)

- 第4条の2 当ホテルは、宿泊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旅館業法（昭和23年法律第138号）第4条の2第1項の規定による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

(宿泊契約締結の拒否)

- 第5条 当ホテル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宿泊契約の締結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ただし、本項は、当ホテルが、旅館業法第5条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宿泊を拒むことがある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1) 宿泊の申し込みが、この約款によらないとき。
 - (2) 満室（員）により客室の余裕がないとき。
 - (3)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宿泊に関し、法令の規定、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 (4)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次のイからハ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 イ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3年法律第77号）第2条第2号に規定する暴力団（以下「暴力団」という。）、同法第2条第6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以下「暴力団員」という。）、暴力団準構成員又は暴力団関係者その他の反社会的勢力
 - ロ 暴力団又は暴力団員が事業活動を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
 - ハ 法人でその役員の中に暴力団員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 (5)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他の宿泊客に著しい迷惑を及ぼす言動をしたとき。
 - (6)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旅館業法第4条の2第1項第2号に規定する特定感染症の患者等（以下「特定感染症の患者等」という。）であるとき。

- (7) 宿泊に関し暴力的要求行為が行われ、又は合理的な範囲を超える負担を求められたとき（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平成25年法律第65号。以下「障害者差別解消法」という。）第7条第2項又は第8条第2項の規定による社会的障壁の除去を求める場合は除く。）。
- (8)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当ホテルに対し、その実施に伴う負担が過重であって他の宿泊者に対する宿泊に関するサービスの提供を著しく阻害するおそれのある要求として旅館業法施行規則第5条の6で定めるものを繰り返したとき。
- (9) 天災、施設の故障、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宿泊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 (10)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他の宿泊客又は利用客に著しく迷惑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大阪市旅館業法の施行等に関する条例第10条の規定に該当するとき。）
- (11)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泥酔等により、又は著しく不潔な身体又は服装をしているため、他のお客様に迷惑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とき。
- (12)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法令若しくは条例の規定若しくは官公庁の指導又はこれに類する事由に該当し、宿泊契約を締結しないことが相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宿泊契約締結の拒否の説明)

- 第5条の2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は、当ホテルに対し、当ホテルが前条に基づいて宿泊契約の締結に応じない場合、その理由の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

(宿泊客の契約解除権)

- 第6条 宿泊客は、当ホテルに申し出て、宿泊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当ホテルは、宿泊客がそ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宿泊契約の全部又は一部を解除した場合（第3条第2項の規定により当ホテルが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してその支払いを求めた場合であって、その支払いより前に宿泊客が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を除きます。）は、別表第2に掲げるところにより、違約金を申し受けます。ただし、当ホテルが第4条第1項の特約に応じ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特約に応じるに当たって、宿泊客が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の違約金支払義務について、当ホテルが宿泊客に告知したときに限ります。
3. 当ホテルは、宿泊客が連絡をしないで宿泊日当日の午後10時（あらかじめ到着予定時刻が明示されている場合は、その時刻を2時間経過した時刻）になっても到着しないときは、その宿泊契約は宿泊客により解除されたものとみなし処理することがあります。

(当ホテルの契約解除権)

- 第7条 当ホテル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宿泊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あります。ただし、本項は、当ホテルが、旅館業法第5条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宿泊を拒むことがある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1) 宿泊客が宿泊に関し、法令の規定、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又は同行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とき。
 - (2) 宿泊客が次のイからハ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 イ 暴力団、暴力団員、暴力団準構成員又は暴力団関係者その他の反社会的勢力
 - ロ 暴力団又は暴力団員が事業活動を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
 - ハ 法人でその役員の中に暴力団員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 (3) 宿泊客が他の宿泊客に著しい迷惑を及ぼす言動をしたとき。
 - (4) 宿泊客が特定感染症の患者等であるとき。
 - (5) 宿泊に関し暴力的要求行為が行われ、又は合理的な範囲を超える負担を求められたとき（宿泊客が障害者差別解消法第7条第2項又は第8条第2項の規定による社会的障壁の除去を求める場合は除く。）。
 - (6) 宿泊客が、当ホテルに対し、その実施に伴う負担が過重であつて他の宿泊者に対する宿泊に関するサービスの提供を著しく阻害するおそれのある要求として旅館業法施行規則第5条の6で定めるものを繰り返したとき。
 - (7) 天災等不可抗力に起因する事由により宿泊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 (8) 宿泊客が、他の宿泊客又は利用客に著しく迷惑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大阪市旅館業法の施行等に関する条例第10条の規定に該当するとき。）
 - (9) 寝室での寝たばこ、消防用設備等に対するいたずら、その他当ホテルが定める利用規則の禁止事項（火災予防上必要なものに限る。）に従わないとき。

宿泊約款

住宿條款

住宿條款

숙박 계약 약관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本酒店責任)

第13條 本酒店在履行住宿協議及其它相關協議時，或因不履行而給住宿賓客造成損失時，將賠償住宿賓客的損失。但是，非本酒店原因造成的損失不在此限。

2、本酒店為預防火災等意外事件，已加入“旅館賠償責任保險”。

(免責事項)

第14條 在本酒店內使用計算機通信（具體指互聯網接入等服務）時，將由使用者本人承擔相應責任。對於計算機通信結果（包括通信速度低下、通信中斷等現象）及使用者本人所遭受的任何損失，本酒店概不負責。另外，本酒店認為因使用計算機通信不當造成本酒店及第三方遭受損失時，將要求使用者賠償該損失。

(無法提供約定客房時的處理)

第15條 如酒店無法為住宿賓客提供約定客房，應在征得住宿賓客同意後，儘可能安排在其他條件相同的住宿設施住宿。

2、不受前款規定的約束，如本酒店無法安排其他的住宿設施，則本酒店向住宿賓客支付與違約金等額的補償費，以該補償費作為損失賠償。但是，如無法提供客房的責任不在於本酒店，則不支付補償費。

(對寄存物品等的處理)

第16條 關於住宿賓客寄存於前台的物品、現金或貴重物品，如發生滅失、毀損等損失時，除因不可抗力造成的情況，本酒店將對該損失進行賠償。但是，關於現金和貴重物品，如本酒店要求住宿賓客告知類型和價值，但住宿賓客未進行告知，本酒店將最多賠償15萬日元的損失。

2、關於住宿賓客帶入本酒店後未向前台寄存的物品、現金或貴重物品，如本酒店因故意或過失導致發生滅失、毀損等損失，本酒店將對該損失進行賠償。但是，關於住宿賓客未提前告知類型和價值的該類物品，除因本酒店故意或重大過失導致的損失，本酒店將最多賠償15萬日元的損失。

(住宿賓客行李及攜帶物品的保管)

第17條 如住宿賓客的行李先於住宿賓客到達本酒店，限於本酒店已提前同意的情況下負責保管，當住宿賓客在前台辦理入住手續時交給本人。

2、住宿賓客在完成退房手續後，如將自身的行李或攜帶物品遺忘在本酒店內，一旦判明失主身份，本酒店將聯繫失主，並徵求失主的處理指示。但是，如果沒有失主的指示或無法確定失主的身份，該物品將被保管7天（包括發現之日），然後之後送往最近的警察署。

3、對於本條第2款所述的住宿賓客行李或攜帶物品，本酒店應承擔的保管責任，如符合第1款所述情況，則適用第1款規定，如符合前款所述情況，則適用本條第2款規定。

(車輛停放責任)

第18條 如住宿賓客在本酒店停車場停放車輛，不論是否向本酒店寄存車輛鑰匙，本酒店僅僅是提供場地，不承擔車輛的管理責任。但是，在進行停車場的管理過程中，如本酒店的故意或過失造成了損失，則本酒店承擔相應的賠償責任。

2、由於本酒店的停車場車滿等而無法提供場所時，可以介紹與本酒店合作的停車場。此時，即使本酒店代替該停車場向住宿客人收取該停車場的使用費，對涉及該停車場使用的合同，應由住宿客人與該停車場直接簽訂，本酒店對該停車場的使用不承擔任何責任。

(住宿賓客的責任)

第19條 如住宿賓客的故意或過失給酒店造成損失，住宿賓客須向本酒店賠償該損失。

附表1 住宿費用等詳細內容（與第2條第1款及第12條第1款相關）

		內 訊
住宿 賓客 應 支 付 的 總 額	住宿費用	① 基本住宿費用（房費（房費+早餐等餐飲費）） ② 服務費（①×10%）
	追加費用	③ 追加餐飲（①中所含內容除外） ④ 服務費（③×10%）
	稅金	(a) 消費稅 (b) 住宿稅

備註 如稅法修改時，以稅法修改後的規定為準
※ 住宿稅作為大阪府法定外目的稅自2017年1月起施行

附表2 違約金（與第6條第2款相關）

申請住宿人數	取消協議通知的收到之日	取消住宿			
		當天	前一天	9天前	
[普通]	最多14名	100%	80%	20%	
[團體]	15名及以上	100%	80%	20%	

(備註)

- 1、%為違約金與基本住宿費的比例。
- 2、如果縮短住宿天數，無論縮短多少天，都將收取1天（第1天）的違約金。
- 3、如團體賓客（15名及以上）的部分人數取消住宿協議，在住宿10天前（如在那天之後受理申請，則為受理之日），相當於住宿人數的10%（去掉位數，上一位加一）的人數，不收取相應的違約金。

住宿條款

< 繁體字 >

(適用範圍)

第1條 本飯店與住宿旅客之間簽訂之住宿契約及其相關契約，係依本條款之規定；本條款未規定之事項，悉依法令（法令或根據法令制定的規則。以下同。）或一般既定習俗之規範。

2、本飯店在不違反法令等和既定習俗之範圍內接受特別約定時，無論前項規定如何，應以該特別約定為優先。

(申請住宿契約)

第2條 欲向本飯店申請住宿契約者，應向本飯店提出以下事項。

- (1) 住宿旅客姓名
- (2) 住宿日期和預定到達時間
- (3) 住宿費用（原則上依照附表1的基本住宿費計算。）
- (4) 其他本飯店認為必要之事項

2、若住宿旅客於住宿期間內提出超過前項第2款所述的住宿日期的延長申請，本飯店在旅客提出申請的時點，將視為新的住宿契約申請進行處理。

(住宿契約之成立等)

第3條 住宿契約於本飯店承諾前項條款之申請時即告成立。但若經證明本飯店並無承諾時，則不在此限。

2、住宿契約依前項規定成立時，以住宿期間（超過3天者依照3天計算）之基本住宿費為限，住宿旅客應於本飯店指定的日期前支付本飯店所規定的訂金。

3、訂金將優先抵扣住宿旅客最終應支付的住宿費用，如果發生適用於第6條及第19條規定的事態時，將依照違約金、損害賠償金的順序抵扣，如有剩餘金額，則再依第12條之規定於進行費用支付時退還。

4、若未將第2項中的訂金，依同項之規定於本飯店指定日期前支付時，住宿契約即告失效。但僅限於本飯店曾告知住宿旅客訂金之付款期限的情況。

(無須支付訂金之特別約定)

第4條 儘管有前條第2項之規定，在住宿契約成立後，本飯店亦有可能依照特別約定，不要求預先支付同項之訂金。

2、當承諾住宿契約的申請時，若本飯店未依照前條第2項要求支付訂金，且未指定該訂金的支付期限時，則視為接受依前項特別約定辦理。

(請求配合設施內之感染預防措施)

第4條之2 本飯店有權要求欲住宿者依日本旅館業法（1948年法律第138號）第4條之2第1項之規定，配合設施內之感染預防措施。

(拒絕簽訂住宿契約)

第5條 如有下列情況，本飯店不排除拒絕住宿契約之簽訂。

但是，本飯店不會就日本旅館業法第5條所列各款情況以外，故意拒絕提供住宿服務。

- (1) 未依照本條款申請住宿時。
- (2) 因客滿而無空房時。
- (3) 欲住宿者經認定可能有違反與住宿相關的法令規定、公共秩序、或善良風俗的行為時。
- (4) 欲住宿者經認定符合以下一至三項的情況時。
 - 一 根據防止暴力團成員不法行為等相關法律（1991年法律第77號）第2條第2款中所規定的暴力團（以下統稱「暴力團」）、同法第2條第6款所規定之暴力團成員（以下統稱「暴力團成員」）、暴力團准構成員或暴力團相關人士和其他反社會勢力
 - 二 當法人或其他團體涉及由暴力團或暴力團員主導其事業活動時
 - 三 公司董事中有符合暴力團成員條件的法人
- (5) 欲住宿者有明顯造成其他住宿旅客困擾之言行舉止時。
- (6) 當欲住宿者經查明屬於日本旅館業法第4條之2第1項第2款所規定之法定傳染病患者時（以下統稱「法定傳染病患者」）。
- (7) 當欲住宿者出現與住宿相關的暴力脅迫行為，或要求超出合理範圍之負擔時（推動不得以身心障礙身為由予以歧視的法律（2013年法律第65號。以下統稱「消除身心障礙者歧視法案」）適用於第7條第2項或第8條第2項所規定之應消除對身心障礙者的社會壁壘的情況則除外。）。
- (8) 當欲住宿者多次對本飯店提出根據日本旅館業法施行細則第5條之6所規定的、給旅館造成過重負擔並有可能妨礙向其他客人提供服務的要求時。
- (9) 因天災、設施故障或其他不可避免之事由而無法提供住宿時。
- (10) 欲住宿者經認定可能對其他住宿旅客或使用者明顯造成困擾時。（符合大阪市旅館業法的施行等相關條例第10條之規定時。）
- (11) 擬住宿的客人由於大醉等，或者由於身體或服裝明顯不整潔，有可能煩擾其他顧客時。
- (12) 擬住宿的客人，依據法令或條例的規定以及政府機關的指令，或因與之類似的緣由，被認為無法簽訂住宿合同時。

(拒絕簽訂住宿契約的說明)

第5條之2 當本飯店基於前項條款拒絕簽訂住宿契約時，欲住宿者有權要求詳細說明原因。

宿泊約款

住宿條款

住宿條款

숙박 계약 약관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住宿旅客之契約解除權)

- 第6條 住宿旅客可向本飯店提出解除住宿契約。
2. 本飯店在住宿旅客因可歸責於其自身之事由而解除全部或一部分住宿契約時(依照第3條第2項之規定,當在本飯店指定訂金支付日期並要求支付時,住宿旅客在該支付前已解除住宿契約時除外。),將依附表2所列明之內容,收取違約金。但在本飯店接受第4條第1款的特別約定的情況下,根據該特別約定之規定,住宿旅客解除住宿契約時的違約金支付義務,僅在本飯店已向住宿旅客明確告知該義務時適用。
3. 若住宿旅客於住宿當天晚上10點(如有事先告知預定到達時間,則為該時間的2小時後)仍未到達且無事先聯絡時,本飯店將視為住宿旅客解除該住宿契約來處理。

(本飯店之契約解除權)

- 第7條 如有下列情況,本飯店不排除解除住宿契約。但是,本飯店不會就日本旅館業法第5條所列各款情況以外,故意拒絕提供住宿服務。
- (1) 欲住宿旅客經認定可能有違反與住宿相關的法令規定、公共秩序、或善良風俗的行為時、或經認定曾進行過相同行為時。
- (2) 住宿旅客經認定符合以下一至三的情況時。
- 一 暴力團、暴力團成員、暴力團准構成員或暴力團相關人士和其他反社會勢力
 - 二 當法人或其他團體涉及由暴力團或暴力團員主導其事業活動時
 - 三 公司董事中有符合暴力團成員條件的法人
- (3) 住宿旅客有明顯造成其他住宿旅客困擾之言行舉止時。
- (4) 當住宿旅客經查明屬於法定傳染病患者時。
- (5) 當欲住宿者出現與住宿相關的暴力脅迫行為、或要求超出合理範圍之負擔時(若住宿旅客適用於消除身心障礙者歧視法案第7條第2項或第8條第2項所規定之應消除社會歧視的情況則除外。)
- (6) 當住宿旅客多次對本飯店提出根據日本旅館業法施行細則第5條之6所規定的、給旅館造成過重負擔並有可能妨礙向其他客人提供服務的要求時。
- (7) 因天災等不可抗力之事由,無法提供住宿服務時。
- (8) 住宿旅客經認定可能對其他住宿旅客或使用者明顯造成困擾時。(符合大阪市旅館業法的施行等相關條例第10條之規定時。)
- (9) 在客房床上吸菸、對消防設備等進行惡作劇、或不遵守其他本飯店規定的使用規則之禁止事項(僅限於預防火災之必要事項。)時。
- (10) 住宿客人由於大醉等,或者由於身體或服裝明顯不整潔,有可能煩擾其他顧客時。
- (11) 住宿客人,依據法令或條例的規定以及政府機關的指令,或因與之類似的緣由,被認定為適合解除住宿合同時。
2. 本飯店依前項之規定解除住宿契約時,不會向住宿旅客收取尚未提供的住宿服務等費用。

(解除住宿契約的說明)

- 第7條之2 當本飯店基於前項條款解除住宿契約時,住宿旅客有權要求詳細說明原因。

(住宿登記)

- 第8條 住宿旅客應在住宿當天於本飯店櫃檯處登記以下事項。
- (1) 住宿旅客的姓名、通訊地址和聯絡方式
- (2) 在日本國內無通訊地址的外籍旅客,請提供國籍和護照號碼
- (3) 其他經本飯店認定之必要事項
2. 住宿旅客欲使用旅行支票、住宿券、信用卡等能夠代替貨幣之方法支付第12條之費用時,請事先於前項登記時出示。

(客房的使用時間)

- 第9條 住宿旅客可使用本飯店客房的時間為下午3點到次日正午為止。但連續住宿的情況下,除了到達日及退房日之外,全天皆可使用。
2. 儘管有前項之規定,本飯店亦有可能提供超出同項規定時間外的客房使用服務。屆時,將酌收以下所列明之追加費用。
- (1) 延長3小時以內,收取房費的於房費金額的30%
- (2) 延長6小時以內,收取房費的相當於房費金額的50%
- (3) 延長6小時以上,收取或相當於房費金額的100%

(遵守使用規則)

- 第10條 住宿旅客於本飯店內,應遵守本飯店所規定並公告於飯店內的使用規則。

(營業時間)

- 第11條 本酒店的設施等的營業日及營業時間,會通過客房內的服務目錄、酒店內公告等予以告知。但是,在不得已的情況下,有可能發生臨時性變動屆時,本酒店將通過適當的方式進行告知。

(支付費用)

- 第12條 住宿旅客應支付的住宿費用等明細,如附表1所列明之內容。
2. 前項住宿費用的支付,可使用貨幣或本飯店認可的旅行支票、住宿券、信用卡等替代方式繳費,住宿旅客請在到達時或本飯店請求繳費時,於櫃檯辦理。
3. 當本飯店提供客房給住宿旅客,並且客房可供使用後,即使住宿旅客任意取消訂房,該情況下仍會收取住宿費用。

(本飯店之責任)

- 第13條 本飯店因履行住宿契約及其相關契約,或因不履行而對住宿旅客造成損害時,將賠償其損害。但若肇因為不可歸責於本飯店之事由時,則不在此限。
2. 本飯店為應對發生火災等意外,已投保旅館賠償責任保險。

(免責事項)

- 第14條 於本飯店內使用電腦通訊(具體指網路網路連線等服務)時,使用者應自行承擔責任。電腦通訊的結果(包括通訊速度下降、斷線等),若導致使用者任何損害時,本飯店概不負責。此外,經本飯店判斷該電腦通訊使用行為不適當,而造成本飯店及第三人損害時,使用者應負責賠償該損害。

(無法按照契約提供客房時的處理方式)

- 第15條 當本飯店無法按照契約提供住宿旅客預訂之客房時,應在取得住宿旅客的同意下,盡力安排其他相同條件的住宿設施。
2. 儘管有前項之規定,當本飯店無法安排其他住宿設施時,將支付住宿旅客與違約金相同金額之補償費,並將該補償費作為損害賠償金。但若無法提供客房的原因為不可歸責於本飯店之事由時,將不支付任何補償費。

(寄存物品之處理方式)

- 第16條 住宿旅客寄存於櫃檯之物品或現金及貴重物品發生了滅失、毀損等損害時,除不可抗力之情況外,本飯店將賠償其損害。但當本飯店對於現金和貴重物品,要求住宿旅客提供其種類和價值之聲明,而住宿旅客未能履行時,本飯店將以15萬日圓為限,賠償其損害。
2. 住宿旅客攜帶進入本飯店但未寄存於櫃檯之物品或現金及貴重物品,若因本飯店之故意或過失而發生了滅失、毀損等損害時,本飯店將賠償其損害。但針對住宿旅客未事先明確告知種類及價值之物品,除本飯店故意或有重大過失之情況外,本飯店將以15萬日圓為限,賠償其損害。

(保管住宿旅客之隨身行李或攜帶物品)

- 第17條 若住宿旅客的隨身行李先於旅客到達本飯店,本飯店僅限於在行李到達之前已了解的情況下負責予以保管,並在住宿旅客在櫃檯辦理入住手續時交予旅客。
2. 住宿旅客辦理退房後,若發現住宿旅客的隨身行李或攜帶物品遺忘在本飯店,如為可判斷其物主的情況下,本飯店將聯絡該物主並徵求其指示。但若物主未給予指示,或無法判斷其物主時,本飯店將自發現日起保管7天,之後將送交至就近的警察局。
3. 關於前兩項所述的情況下,本飯店對於住宿旅客隨身行李或攜帶物品之保管責任,若為第1項依前條第1項之規定,若為前項則依同條第2項之規定辦理。

(停車責任)

- 第18條 住宿旅客使用本飯店停車場時,不論是否有寄存車輛鑰匙,本飯店僅提供車位,對停放之車輛不負責任。但在停車場的管理上,若因本飯店故意或過失而發生損害時,本飯店將承擔其賠償責任。
- (2) 由於本酒店的停車場車滿等而無法提供場所時,可以介紹與本酒店合作的停車場。此時,即使本酒店代替該停車場向住宿客人收取該停車場的使用費,對涉及該停車場使用的合同,應由住宿客人與該停車場直接簽訂,本酒店對該停車場的使用不承擔任何責任。

(住宿旅客之責任)

- 第19條 若因住宿旅客之故意或過失而使本飯店蒙受損害時,該住宿旅客應向本飯店賠償其損害。

附表1 住宿費用等明細(第2條第1項及第12條第1項相關)

		內 訊
住宿旅客應支付總額	住宿費用	① 基本住宿費(房費(以及房費+早餐等餐飲費)) ② 服務費(①×10%)
	追加費用	③ 追加餐飲(不包含①中的品項) ④ 服務費(③×10%)
	税金	一 消費稅 二 住宿稅

備註 如稅法修改時,以稅法修改後的規定為準

※ 住宿稅作為大阪府法定外目的稅自2017年1月起施行

附表2 違約金(第6條第2項相關)

契約申請人數	收到解除契約之通知日	不住宿	當天	前一天	9天前
		不	不	不	不
[一般]	最多14名	100%	80%	20%	—
[團體]	15名~	100%	80%	20%	10%

(注)

1. %是相對於基本住宿費之違約金比率。

2. 在契約天數縮短的情況下,不論縮短天數為何,將收取1天分(第一天)的違約金。

3. 若團體旅客(15名以上)中有部分需要解除契約的情況,於預定住宿日期的10天前(若在該日期之後提出申請,則以接受申請的當天起算)通知解約時,針對相當於預訂住宿人數10%(小數點進位到整數)的解約人數,將不收取違約金。

宿泊約款

住宿條款

住宿條款

숙박 계약 약관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적용 범위)

- 제1조 본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청하셔야 합니다.

- (1) 숙박자명
 - (2) 숙박 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요금에 의한다.)
 -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것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 초과 시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요금의 한도 내에서 본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위약금에 뒤따라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본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구)

제4조의 2 본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 138호) 제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다음에 기재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호텔은 여관업법 제5조에 기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만원)로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법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서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언동을 했을 때.
-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감염증 환자 등(이하 "특정감염증 환자 등"이라 한다.)일 때.
-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동반되는 부담이 과중한 경우로서,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서 정한 사항을 반복하였을 때.

- (9)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10)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 또는 이용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오사카시 여관업법의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11)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또는 현저하게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 다른 고객에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12)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나 조례 규정 또는 관공서 지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어 숙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에 대한 설명)

제5조의 2 숙박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본 호텔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제시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할 경우에, 당해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관해서는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를 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7조 본 호텔은 다음에 기재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호텔은 여관업법 제5조에 기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서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언동을 했을 때.
 - (4) 숙박객이 특정감염증 환자 등일 때.
 -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숙박객이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동반되는 부담이 과중한 경우로서,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서 정한 사항을 반복하였을 때.
 - (7)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하지 못할 때.
 - (8)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 또는 이용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오사카시 여관업법의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9) 침실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상 금지 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경우.
 - (10) 숙박 고객, 만취 또는 현저하게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 다른 고객에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11) 숙박 고객, 법령이나 조례 규정 또는 관공서 지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어 숙박 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제7조의 2 숙박객은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본 호텔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宿泊約款

住宿條款

住宿條款

숙박 계약 약관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에 본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여권번호
- (3)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객실 사용시간)

제9조 숙박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숙박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행하고 동항에 정한 시간 이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기재한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1) 초과 3시간 미만은 객실요금 상당액의 30%
- (2) 초과 6시간 미만은 객실요금 상당액의 50%
- (3)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요금 상당액의 100%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본 호텔 내에서는 본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은, 호텔 내부에 비치된 팸플릿, 게시 등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들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은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및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숙박객 도착 시 또는 본 호텔 청구 시에 프론트에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부과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3조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본 호텔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면책사항)

제14 조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인터넷 연결 등을 말합니다)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하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통신 결과(통신속도 저하, 중단, 불통 등을 포함합니다) 이용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더라도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때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하여 당 호텔 및 제 3 자에게 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의 취급)

제15조 본 호텔은 계약한 객실을 숙박객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행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본 호텔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해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6조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 발생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明告)를 요구한 경우로서 숙박객이 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호텔은 15만 엔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본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명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만 엔의 한도 내에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7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의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에 책임을 지고,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건네 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 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숙박객이 본 호텔에 둔 채 놓고 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됐을 때 본 호텔은 당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소유자에게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가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이 본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되 차량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차량 관리에 있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당 호텔의 주차장이 만차 등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 호텔과 제휴된 주차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이 해당 주차장을 대신하여 숙박 고객에게서 해당 주차장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주차장 이용에 관한 계약은 숙박 고객과 해당 주차장 간의 직접 체결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9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숙박객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요금(객실요금(및 객실요금+조식 등 음식료)) ② 서비스료(①×10%)
	추가 요금	③ 추가 음식(①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④ 서비스료(③×10%)
	세금	가. 소비세 나. 숙박세

비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세는 오사카부 법정의 목적세로서 2017년 1월부터 시행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노쇼	당일	전날	9일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20%	—
[단체]	15명 이상	100%	80%	20%	10%

(주)

1.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를 단축한 경우 그 단축 일수와는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 숙박객(15명 이상) 중 일부를 계약 해제한 경우에 숙박 10일전(그날 이후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접수날을 기점으로 한다.) 현재의 숙박 인원수의 10%(우수리는 올림 처리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